

종합감사

감 사 보 고 서

-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감사 -

2023. 1.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




목 차



I. 감사실시 개요	1
II. 진흥원 현황	2
III. 감사결과	3
1. 감사결과 총괄	3
2. 지적사항	3
(1) 급량비 집행 부적정(시정)	3
(2) 외부강의 등 신고 소홀(주의)	3
(3) 이월 예산 편성 부적정(주의)	4
(4)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(주의)	4
(5) 정원가산업무비 집행 부적정(주의)	4
IV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	5

【별첨】 처분요구서

I

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「경기도 감사규칙」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감사 실시
-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산 편성·집행 실태, 근태·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, 문제점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
2. 감사중점 및 대상

- 이번 감사에서는 경영기획본부 등 4개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·집행 등 회계 분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, 문서관리 등 일반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였음

3. 감사실시 과정

- 이번 감사는 2022. 12. 5.부터 같은 해 12. 14.까지 8일간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하여 4개 본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

4. 감사결과 처리

-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대상부서로부터 업무 처리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
- 이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, 2023. 1. 27.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음

II

진 흥 원 현 황

1. 일반현황

-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1년 7월에 설립한 지방출연기관으로 환경·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임
-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·에너지 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

2. 조직 및 인력현황

- 조직현황 : 4본부 10팀
- 인력현황 : 정원 51명, 현원 60명

3. 재정현황

- 예산규모(2022년 본예산 기준)

(단위 : 천원)

합 계	출연금	수탁사업	비고
61,616,683	5,542,953	56,073,730	

4. 주요사업

-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사업 추진
- 지역 환경현안 조사·연구 및 국내·외 교류 협력
-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,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
-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및 녹지·생태계 보전
- 환경·에너지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, 환경거버넌스 지원 등

III 감사결과

1. 감사결과 총괄

○ 행정상 5건(주의 4건, 시정 1건), 재정상 1건(518천원)

(단위 : 건, 명, 천원)

행정상					신분상			재정상		
계	주의	시정	개선	통보	계	징계	훈계	계	환수	부과
					건수 (인원)	건수 (인원)	건수 (인원)	건수 (금액)	건수 (금액)	건수 (금액)
5	4	1	-	-	-	-	-	1(518)	1(518)	-

2. 지적사항

○ 급량비 집행 부적정(시정)

- 급량비 집행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는 자 등을 제외해야 함에도

▶ ○○○○본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하지 않고 급량비 지출

- 「경기도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급량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급량비(518천원)를 환수하도록 ‘시정’ 요구

○ 외부강의 등 신고 소홀(주의)

- 임직원은 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 요청명세 등을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

▶ 임직원 5명은 요청 명세 없이 원장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으며, 그 중 1명은 원장 승인없이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수행

- 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‘주의’ 요구

○ 이월예산 편성 부적정(주의)

-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“목”내에서 “세목”을 변경하여야 함에도

▶ ■■■■■본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'21년 예산을 이월하고, '22년 추가경정예산에 이월된 예산 연구용역비를 동일 목이 아닌 타목(일반운영비, 여비, 교육훈련비, 민간사업지원금 등)으로 변경

- 「2022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 등에 따라 예산 이월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‘주의’ 요구

○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(주의)

-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,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집행하여야 함에도

▶ ○○○○본부는 행사 추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로 피복을 구입하고, 피복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제공

- 「2022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」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‘주의’ 요구

○ 정원가산업무비 집행 부적정(주의)

- 정원가산업무비는 동호회 활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

▶ ○○○○본부, ■■■■■본부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임직원 간담회 경비 등을 정원가산업무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

- 「2022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」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‘주의’ 요구

IV

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원)

일련 번호	소관기관	처분요구 (및 권고·통보) 종류	제 목	금 액 (인원)
1	○○○○본부	시정	급량비 집행 부적정	518,000
2	■■■■■본부 △△△△△본부 ▼▼▼▼▼본부	주의	외부강의 등 신고 소홀	-
3	■■■■■본부	주의	이월 예산 편성 부적정	-
4	○○○○본부	주의	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	-
5	○○○○본부 ■■■■■본부	주의	정원가산업무비 집행 부적정	-